

기술규제 개선으로
기업은 이런 혜택을 얻게 됩니다



유사한 인증을 여러 번 받았어야 했는데,
중복 인증 해소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국내규정이 국제기준과 달라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각각 생산했어야 했는데, 규정이 국제기준과
부합화되어 단일 모델로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검사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과도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았는데,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술규제가 발목을 잡을 땐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화학·환경·생활용품·식품
(화학분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E-mail. liric92@ktr.or.kr
TEL. 02-2164-0037



건설·기계·수송(건설분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mail. limjh0472@kcl.re.kr
TEL. 02-3415-8758



전기·전자·의료
(전기전자분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E-mail. swlee@ktc.re.kr
TEL. 031-470-1610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Tel. 043-870-5524 E-mail. roy@korea.kr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개선 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불합리한 기술규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과도한 규제
기준이 너무 높아 준수하기가
어려워요!



중복 규제
비슷한 인증인데 왜 각각
받아야 하나요?



국제기준과 다른 규제
해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인데,
국내용으로 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기준이 오래되어
새로운 제품에 맞지 않아요!

곳곳에 숨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기술규제를
만들어지기 전에 한 번! 만들어진 후에 한 번!
살살이 찾아내어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제대응 부담 경감을 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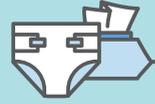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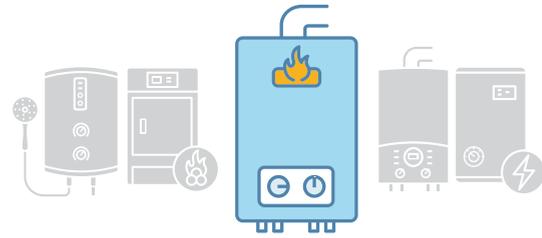
보일러 부품 변경 시 인증 절차 간소화

개정전

환경표지 및 가정용보일러 인증 후 보일러 주요 부품(열교환기, 버너, 가스밸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인증 유지를 위해 모든 모델에 대해 다시 시험해야 함

개선

부품변경 시 연료별 대표모델만 시험 실시하도록 제도 개선



위생용품 인증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개정전

기저귀 등 위생용품은 제품과 관련한 외국 인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제품 포장에 표시 할 수 없어, 프리미엄 제품 마케팅에 걸림돌이 됨

개선

외국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



제·개정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기술규제영향평가

가정용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개정전

기체연료 2등급 보일러의 시험방법으로 가스온수 보일러 관련 표준만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콘덴싱 방식에 대응하기 어려움

개선

기체연료 2등급 보일러 시험방법으로 KS B 8127 (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을 추가해 콘덴싱 보일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법정 인증제도의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전국호환교통 카드인증

개정전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 기준이 모바일을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기준 개선 필요

개선

모바일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증기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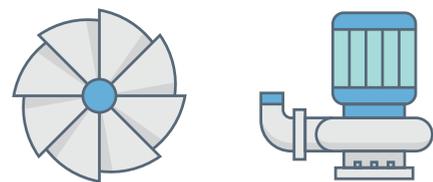
소방펌프 내 녹 방지 조치를 통한 소방장비 신뢰성 확보

개정전

소방펌프 임펠러의 재질 기준이 없어 부식성이 있는 주철이 통상적으로 사용됨. 이에 소방펌프 고장이 잦아 화재 대응에 어려움이 되고 있음

개선

소방펌프 관련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임펠러를 사용하도록 함



환경표지인증 어린이가구 시험기준 개선

개정전

어린이가구의 환경표지인증 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의 시험*을 중복 실시하여야 하므로 업계 부담이 큼
* 데시케이터법/소형챔버법

개선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을 "소형챔버법"으로 통일해, 인증시 시험비용 절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전

살균제 및 살조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기준 중 분리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항목*이 있어, 기준 합리화가 필요함

개선

기존 장비와 시험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변경

* 살균제 주성분 중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
살조제 주성분 중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차아염소산칼륨 등



승강기검사

개정전

승강기 심사 설계심사 시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기간이 1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보완을 반영하기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함

개선

설계심사 보완기간을 2개월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